

데스크 시각



김경란 광주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다른 사람보다도 초고속으로 승진하는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일을 잘 하니가 상사가 계속 일을 주었고 그녀는 상사에게 칭찬받기 위해 야근도 하고 주말도 반납해 가며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해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여성은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다는 말을 못 했을까?” “상사가 나를 싫어하게 되고, 내가 상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서 두려웠어요.”
이 여성은 어렸을 때 엄마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 무척 싫은 날에도 심부름을 안 한다고 했다가 엄마에게 크게 혼난 적이 많아서 상사에게 싫다는 소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하라는 것은 무조건 다 하였고, 엄마는 불평 한마디 없

아이의 솔직한 감정표현을 격려하세요

이 말 잘 듣고 심부름도 잘하는 딸을 작하 다며 칭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더욱 열심히 엄마의 비위를 맞추는 ‘착한 아이’가 되어 갔던 겁니다.
그런 성장과정을 경험한 이 여성은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엄마와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직장 상사와의 사이에서도 그대로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상사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면서도 자신에게 너무 많은 업무를 지시하는 상사가 미워지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자녀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항상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옳다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화가 난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 부모는 조용히 하라며 다그칩니다.
또 아이가 신나서 떠들고 있는데, 부모는 “떠들면 안 돼! 조용히 해!”라고 이야기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이 “떠들면 안 된다”고만 강조하는데 그렇지만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화가 나도 화내지 못하고 신이 나는데도 신나는 표현을 하지 못하게 하면 아이로서는 자신의 기분이 옳지 않고 자신이 ‘나쁜 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 진짜 재미있다 보구나! 그렇게 신나는 게 있었어?”라고 반응하며 아이들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동시에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싫어할 거야. 10분쯤 있다가 바깥으로 나갈 거니까 그때 짹 소리지면서 놀자”라고 말하면 아이의 감정도 인정해 주고, 왜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지도 알려주어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솔직하게 자신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어서 마음이 건강하고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무당벌레를 잡아와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엄마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엄마는 “벌레를 집어 가져오면 벌 걸려, 어서 밖에 버리고 와!”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자기가 무당벌레를 보고 느낀 감정을 엄마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혼만 나게 됩니다.
만약 엄마가 “예쁘구나, 참 신기하네! 어디서 잡았어? 그런데 집안에 두면 오래 살지 못하고 벌균이 옮을 수 있으니까 놀아주고 오자”라고 말한다면 아이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이는 엄마와 함께 무당벌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자신이 존중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부모는 자녀의 분노라는 감정을 인정해주기를 꺼리고 심지어 분노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 있는 아이의 마음에 반응하고 공감해 주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가 “지민이를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지민이를 때려주고 싶을 만큼 화가 많이 났구나!” 라고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서 자녀의 기분을 인정해주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분노를 알고, 아이가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분노를 표현하게끔 지도해야 합니다. 단 표현하는 방법은 폭력적이지 않고 타협이 가능한 수준에서 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살아가면서 감정의 문제가 있을 때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배우게 하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기분을 솔직하고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모가 아이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특히 분노와 같은 격한 감정은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서 표출될 때 자녀의 삶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社說

‘쌀 시장 개방’ 외교적 협상으로 해결하라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사실상 공식 화하고 나섰다.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20년간 유지되어 온 쌀 관세화 유예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쌀 시장 개방 쪽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쌀 생산기반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도(農道) 전담은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 20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높은 관세율을 적용해 국내 시장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2015 수입 물량을 추가로 늘리는 것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개방 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부 농민단체는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쌀 시장을 반드시 개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관세화도 미루고 의무수입 물량도 동결하는

亞문화전당 운영, 정부가 맡는 게 순리다

2015년 개관을 앞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주체를 결정할 특별법이 반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사업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와 지역 문화계, 정치권 등이 문화전당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도 없다’는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문화부가 지난해 제출한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박해자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동시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이날 임시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 등에 밀려 법안소위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 주체를 둘러싼 정부안과 박해자 의원 안의 핵심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다. 정부안은 ‘문화전당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시아문화원 또는 관련 전문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정부가 자체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지는 않겠다는 예이다.
이에 반해 박 의원 안은 ‘정부가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로 바꾸는 등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문화원과 전문단체·법인에 위탁할 경우 그 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는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 장관은 “정부가 문화전당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문화전당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고, 결국 경영 예산이 어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광주시와 지역적 지원도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박상현 광주지방법원 판사

월드컵 열기에 다소 밀린 듯한 느낌이지만, 700만 관중의 시대를 맞이한 프로야구의 열기가 뜨겁다. 4년째를 노리는 구단이 있는가 하면 2년차 신생구단 또한 우승을 노리는 다크호스로 떠올랐고, 거액을 들여 FA를 꽤나 영입했음에도 성적이 신통치 못한 구단도 있다. 그런가하면 사상 유례없는 타고투저 시대를 맞이하여 큰 점수차를 극복하고 역전승을 일궈내는 등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자주 나오기도 한다. 그만큼 올해 한국 프로야구는 관중들에게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바로 ‘오심’ 논란이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지만 오심으로 인해 경기의 흐름이 끊기거나 상대팀에게 넘어가고 때론 결정적인 오심으로 인해 경기의 승패가 갈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오심논란으로 프로야구에선 비디오판독 도입 논란이 일고 있다. 스포츠 중계기술의 발달로

오심(誤審)과 오판(誤判)

잘못된 심판 판정이 카메라에 담기고 이것이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인터넷이나 SNS를 뜨겁게 달구기도 한다.
프로야구, 더 나아가 스포츠 세계에서 오심 논란과 마찬가지로 재판과 관련된 하에서는 종종 ‘오판(誤判)’ 논란이 일기도 한다. 민사소송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형사소송에서의 오판은 그 당사자에게 돌아갈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사극사건과 관련된 오판 논란이 많았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수사기관의 강압수사에 따른 허위자백이나 위헌적 법률규정의 적용으로 인한 오판이 대부분이라 우리 사법사에 있어서 암울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로 구제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오판 논란은 여러 번 있었다. 과거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 DNA검사 등 과학적 수사기법의 발달이나 진법의 체포 등으로 인하여 사후 구제된 경우가 꽤나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의 오판 논란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구에 회자되었던 사건이 ‘O.J. 심슨(Simpson)’ 사건이다.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였던 O.J. 심슨이 그의 전처와 전처의 남자친구를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인데, 형사재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당시 미국의 상당수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O.J. 심슨이 살인범이라고 생각했지만 배심원들의 무죄판결로 인해 배심재판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오판을 시정하기 위해 상소(上訴)제도와 재심(再審)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재판도 신이 아닌 인간이 하는 것이기에 오판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스포츠에 있어서 심판은 찰나의 순간을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카메라에 잡힌 느린 화면으로 보면 그 심판의 판단이 오심이었는지 여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원의 판결도 판사가 증거에 관한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법령해석을 잘못하여 오판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재판에 있어서의 오판은 스포츠에 있어서 오심과 달리, 그 판결에 이르게 된 소송 과정과 소송법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오판이라고 할 수 있는 지 의문인 경우가 상당수 있다. 가령, 원고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명백한 객관적 사실인데도 피고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사건에서, 차용증도 없고 현금으로 건네주어 금융거래내역도 존재하지 않으며, 돈을 빌려 준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돈을 빌려 준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이상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위 경우에 있어 판결 자체는 객관적, 실체적 진실에 반하더라도 위 판결을 두고 오판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형사에 있어서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입증되어야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 하더라도 입증 부족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 또한 오판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앞서 본 O.J. 심슨 사건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형사 증거법원칙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의 의미를 충실하게 반영한 판결로서 오판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법률가들도 상당수 있다.
오판을 방지하고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판사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생활 근거를 남기려고 노력하는 국민들의 생활순환(물론 감을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있거나, 서로 믿으면 되지 굳이 문서로 남길 필요까지 있겠느냐는 국민정서상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힘들 것이다), 열심히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는 법조직역 종사자들, 철저한 기록 파악과 소명의식으로 무장된 판사들 모두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질 때 오판은 줄어들 것이다.

기 고



이명진 신용보증기금 광주지점장

우리 민법은 “사람은 생존한 동안 당연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민33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34조)”고 함으로써 ‘법인격 부인론’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과 법인을 법률행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사람은 의사능력이 있어 출생과 함께 당연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법인은 의사능력이 없어 법인의 기관을 통해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로 제한된다는 점이 약간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중소기업금융에서 기업 형태 즉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에 따라 상

기업 창업, 연대보증인 면제제도 적극 활용해야

한책임을 지우는 방식에 차이를 가져와 개인기업은 주채무자 1인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법인기업은 반드시 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또는 과점주주인 이사를 연대입보해 왔다. 더구나 국제기본법에는 “법인(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제, 가산금과 채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제의 납부여부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국제39조)”는 규정을 두어 본인의 연대보증 의사와 관계없이도 기업관련인들에게 법적책임을 부가시키고 있다.
대기업용에 있어 주채무자외에 법인기업 관련인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는 법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 책임경영을 강화함으로써 신용사외 구원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기업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업실패자의 재기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피해 또한 많았다. 이러한 문제로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의 기본운영방향(2012년2월23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업무지도’로, 법인기업의 경우 실제경영자 1인만 연대보증하게 개

선되어 법인기업의 연대책임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는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법인기업의 자금조달 행위에 기업의 의사를 결정하는 누군가는 연대보증을 서야한다는게 현재의 원칙이고 그 정도까지는 기업관련인의 연대책임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여전히 사업실패자의 재기는 불가능하고 사업실패후 재기에 대한 불완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까지 어렵게 하는게 현실이다.
창조경제를 표방해 온 신 정부는 ‘창업자 연대보증 임면제 특별조치 운용지침’ 및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중소기업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2014년 1월 금융위원회)을 마련하여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통해 창업 실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우수인력의 창업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따라 4월 2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기술이 원활하게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연대보증면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기관과 금융기관이

이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우수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제도는 우수기술 창업기업과 전문기업으로 구분되는 ①제조업, 신성장동력산업, 창조형서비스산업 영위기업 ②2014년 2월 1일 이후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개시일부터 보증신청 접수일까지 1년내인 기업 ③납입자본금이 1억원이상이 기업(신청금액이 1억미만인 경우 제외) ④발명진흥회 일정한 기술등급이상이 또는 심사등급 SB2이상이거나 기술사상 자격증보유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기업이다.
바야흐로 법인기업 대출에 대한 연대책임제도는 기업경영과 관련이 없는 제3자입보에서 기업관련인들만 입보하는 시대를 지나 기업의 실제경영자1인만이 연대보증채무를 지는 시대에 진입해 있을 더구나 우수기술과 전문가격증을 가진 사람은 연대책임없이도 기업을 창업할 수 있다. 산업화가 뒤져있는 광주, 전남에서도 이런 연대보증인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없이 많은 기업들이 창업하여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Advertisement for 'Woo-eung-gu' (無等鼓) featuring a table with names like '수아레스' and '공격하고,우루과이는 골을 넣는다'.

Advertisement for 'Gwangju Ilbo' (光州日報)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